

제404회 임시회
'22. 10. 17.(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2년 10월 5일
- 회부일자 : 2022년 10월 12일

3. 제안이유

-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충청북도 자연학습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충청북도의회 동의 받기 함.

4. 주요내용

- 위탁대상 :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 (3년)
- 위탁기관 : 청소년 활동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청소년 단체(법인)
※ 現) 위탁기관 : 학교법인 주성학원(2014. 1. 1~ 2022.12.31.) / 3차 재계약
- 위탁방법 :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
- 사 업 비 : 200백만원('22년 운영비 : 도비 100%) *연도별 변동 가능
- 주요 위탁사무
 -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재산 관리
 - 충청북도 자연학습원 시설사용료 부과·징수
 - 충청북도 자연학습원의 공익적 기능에 부합하는 교육·훈련
 - 기타 자연학습원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무 및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

5.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김대진)

가. 제출배경

- 본 동의안은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충청북도 자연학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학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운영의 일부나 전부를 청소년단체 등(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관리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연장할 수 있다.

나. 주요내용 검토

- 충청북도 자연학습원의 민간위탁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¹⁾에 따른 위탁 대상 사무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제4조²⁾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1)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도지사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크게 요구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되는 사무
 4. 그 밖에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단순 행정사무
- 2) 제4조²⁾(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등

- 충청북도 자연학습원은 청소년수련시설로써 청소년들의 다양한 수련활동을 지원하고 안전한 수련활동을 위한 시설 관리·운영과 공익적 기능에 부합하는 교육·훈련 등의 사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홍보와 시설 관리를 통해 이용율을 제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하므로 「충청북도 사무위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크게 요구되는 사무’에 해당된다 할 수 있음.
- 특히 청소년 대상 특화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분야 전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바, 「충청북도 사무위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호에 따른 ‘특수한 전문 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는 사무’에 해당된다 할 수 있으므로 전문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는 학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2001년부터 민간위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의 타당성이 인정됨.

다. 종합 검토의견

- 충청북도 자연학습원의 민간위탁 운영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크게 요구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는 사무’에 해당하는바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담당부서에서는 수탁기관 공모 선정시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전문성 있는 단체 또는 법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향후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위탁 사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야 할 것임.